

# 2023년 4분기 의회사무처 예산 전용보고

〈 의정담당관 〉

## □ 예산전용 개요

### ○ 관련근거

- 지방재정법 제49조 제2항(예산의 전용)
-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5조의2 제3항(예산안 및 예산집행상황의 제출 등)

제55조의2(예산안 및 예산집행상황의 제출 등) ③ 시장 및 교육감은 예산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는 분기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## ○ 보고내용 : 2023년 4분기 의회사무처 예산전용 보고

- 동일 정책사업(의정활동 지원강화) 내 단위사업 간 예산 전용하여 사용

## □ 전용내역 : 총 1건, 10백만원

(단위:천원)

예산과목				예산현액	전용요구액		전용 후 예산액
정책사업	단위사업	세부사업	통계목		증	감	
합 계				385,380	10,000	△10,000	385,380
의정활동 지원강화	예산정책활동 지원사업	시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	사무관리비 (201-01)	302,400	-	△10,000	292,400
	의정민원 지원사업	의정모니터 운영	사무관리비 (201-01)	82,980	10,000	-	92,980

### ○ 전용사유 : 의정모니터 의견접수 급증으로 인한 원고료(사무관리비) 추가확보

- 당초 의견접수 월 100건 기준으로 산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, 의견접수의 급격한 증가(월 평균 130건)로 11 ~ 12월분 접수 의견에 대한 의정모니터 원고료 추가확보를 위해 예산 전용